태극기의 내력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군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수록된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 해 9월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 · 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 · 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 공포하였으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 · 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 · 발표했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 · 시행하여 왔으며, 2007년 1월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도 제정하여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건괘(乾卦: ☰)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 : ☷)는 땅을, 감괘(坎卦 : ☵)는 물을, 이괘(離卦 : ☲)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또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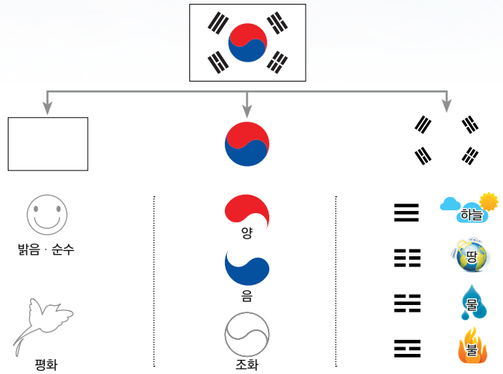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얼굴입니다.
태극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태극기를 제작 · 판매 · 게양 · 보관하는 과정에서
국기에 대한 예절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상징

태극기

The National Flag TAE GEUK GI

행정자치부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않을 수 있다.
-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

(2007년 7월 27일 개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의 제작

깃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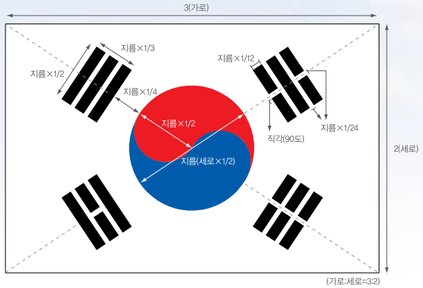

깃대 · 깃봉

-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색은 흰색과 은백색, 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세로 길이의 10분의 1로 한다.

국기의 게양

국기를 게양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		조기(弔旗)게양일
• 3월 1일 (3. 1절)	• 7월 17일 (제헌절)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10월 1일 (국군의 날)	• 국가장 기간 (國家葬 期間)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 각급 학교와 군부대(낮에만 게양)	•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국기를 게양하는 시간

- 국기는 매일 또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국기가 심한 눈 · 비 ·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않는다.

국기를 매일 게양 · 강하하는 경우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기간	게양 시각	강하 시각
3월 ~ 10월	07:00	18:00
11월 ~ 다음해 2월	07:00	17:00

국기의 게양 방법

경축일 및 평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현충일 · 국가장 기간 등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 게양대를 높이 설치한 경우(2008년 7월 17일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

✲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기준)

국기만 달 때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①	① ②	② ① ③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해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3항)
→ 동 규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개정(2008.7.17.) 이후 국기게양대를 다시 설치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

✲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기준)

국기만 달 때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3개와 함께 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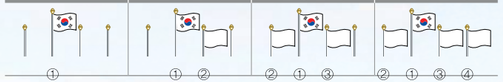			
①	① ②	② ① ③	② ① ③ ④

[국기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2008년 7월 17일 이전 설치한 게양대)]

국기만 달 때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3개와 함께 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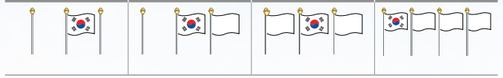			
①	① ②	② ① ③	① ② ③ ④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국기의 게양 위치

단독주택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공동주택
앞쪽 베란다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

국기의 보관 · 활용

국기의 활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 · 보관할 수 있다.
- 실내 · 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 ·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 ·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 · 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활용 제한

-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기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 ·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 · 안내해야 한다.

국기의 구입

- 국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몰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